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누구든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6조의3제2항 신설, 안 제8조의2제1항제6호·제15조제2항제4호·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안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).
-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6조의3제3항 및 안 제30조제1항제1호 신설).
-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).
-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운전자 등에게 자동차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,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견인 등의 조치를 요청하며, 요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 등의 조치를

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제3항부터 5항까지 및 제19조의3제5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(주서본 참조).

첫째,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안 제15조제3항은 노외 또는 부설 주차장에서 주차방해로 인해 출입구 진출입 불가 시 노외주차장관리자¹⁾가 안 제6조의3제3항²⁾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 변경이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이를 “제6조의3제3항²⁾에 따른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”와 같이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, 안 제15조제2항제5호³⁾의 사례와 같이 “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”로

1)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

2) 안 제6조의3(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)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) 안 제15조(관리방법)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(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)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5.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

수정함으로써 통일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<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5조(관리방법) ③ 노외주차장관리자(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)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.	제15조(관리방법) ③ ----- ----- ----- -----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----- ----- -----.

둘째, 현행규정을 고려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.

- 안 제15조제4항과 제5항은 주차장 진출입 불가행위에 대해 노외주차장관리자⁴⁾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 변경이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하고, 이에 응하지 않을 시 “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⁵⁾”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해당 조치를

4)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

5) 「주차장법」 제8조의2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)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
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련하여, 인용조문인 현행법 제8조의2제2항은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이에 맞추어 안 제15조제4항과 제5항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에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을 각각 추가하여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.

<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5조(관리방법)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<u>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</u> 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	제15조(관리방법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</u> 에게-----.
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<u>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</u> 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	⑤ -----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</u> 은 ----- ----- ----- -----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